



# 제60기 정기총회 안건

- (총회일시) 2023년 2월 24일(금) 14시~17시
- (총회장소) 코리안리재보험빌딩 12층 대강당(종로구 종로5길 68)
- (참가신청) ~2023년 2월 23일(목)
- (서면위임) 불참 회원(22년 회비 납부 회원에 한함)의 경우, 2/23(목)까지 서면 위임

# 1. (의결 1호) 제59기 결산(안)에 대한 승인

## II 의결 주문

- 제60기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승인을 거쳐 ‘제59기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II 제안 이유

- 정관 제13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 제59기 결산(안)에 대해 총회 의결안건으로 상정

## II 주요 내용

- 제59기 결산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사인) 곽승현 감사(삼성화재해상보험, 회계 부문 등), 장이규 감사(보험개발원, 업무 부문 등)
  - (감사내역)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수입/비용 결산서, 부속명세서, 추진 업무 등
  - (감사기간) 2023년 1월 30일(월) ~ 2월 10일(금)
  - (감사결과) (사)한국보험계리사회의 정관 및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제59기 말 재무상태와 회계처리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업무 수행 등에 이상 없음 확인(※ 정기총회 승인 후, 주무관청인 금융위에 보고 예정)

# 1. (의결 1호) 제59기 결산(안)에 대한 승인

## II 재무상태표 (2022.12.31. 기준, 단위 : 원)

과목	제59기 (기준)	제58기 (비교)
<b>자 산</b>		
<b>가. 유동자산</b>	<b>1,608,570,320</b>	<b>1,585,731,809</b>
(1) 당좌자산	1,608,570,320	1,585,731,809
(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	44,278,643	130,714,214
(나) 단기금융상품	1,550,000,000	1,450,000,000
(다) 매출채권	1,414,000	1,290,000
(라) 선급비용	637,239	578,250
(마) 미수수익	12,240,438	3,149,345
<b>나. 비유동자산</b>	<b>70,847,910</b>	<b>70,847,910</b>
(1) 유형자산	-	-
(가) 비품	51,911,680	51,911,680
(나) 감가상각누계액	(51,911,680)	(51,911,680)
(2) 기타 비유동 자산	70,847,910	70,847,910
(가) 임차보증금	70,847,910	70,847,910
<b>자산 총계</b>	<b>1,679,418,230</b>	<b>1,656,579,719</b>

## II 재무상태표 (2022.12.31. 기준, 단위 : 원)

과목	제59기 (기준)	제58기 (비교)
<b>부 채</b>		
가. 유동부채	48,198,780	25,260,914
(1) 유동부채	48,198,780	25,260,914
(가) 미지급금	28,101,780	15,969,384
(나) 예수금	20,097,000	9,291,530
나. 비유동부채	70,847,910	50,116,667
(1) 비유동부채	43,325,000	50,116,667
(가) 퇴직급여충당부채	43,325,000	50,116,667
부채 총계	91,523,780	75,377,581
<b>순 자산</b>		
가. 제약 없는 순자산	1,587,894,450	1,581,186,410
나. 제약 있는 순자산		15,728
순자산 총계	1,587,894,450	1,581,202,138

- 제59기 말, 총 자산 약 16억 8천만 원, 부채 약 9천 백만 원, 순자산 약 15억 9천만 원

# 1. (의결 1호) 제59기 결산(안)에 대한 승인

## II 운영성과 (운영성과표는 다음페이지 참고)

- **(개요)** 총 수입 8억 3천 6백만 원(예산 대비 80.4%), 지출 8억 3천만 원(예산 대비 87.6%)으로 약 6백만 원 수지차 발생
  -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 총회 미개최 및 국제계리사회 총회 온라인 개최(하반기 총회만 참석)로 관련 수입 및 지출 미 발생, 다만 계리사법 제정 추진 및 계리보고서 제정 관련 지출 신규 발생
- **(수입부문)** 당초 예산 대비 총 수입 약 1억 3천만 원 감소
  - 6월 총회 미개최로 참가비 및 후원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에 따른 기타 수입 부분 8천 9백만 원 감소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 제한으로 교육 수입 부분이 6천 5백만 원 감소
  -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잡이익 증가로 해당 수입 부분 2천 4백만 원 증가
- **(지출부문)** 예산 효율적 집행 및 비용 절감 달성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과정 축소로 교육비 지출 약 5,700만원 감소, 6월 총회 미개최로 지출 약 5,000만 원 감소 및 국제회의의 온라인 참석으로 관련 비용 약 2,500만원 감소
  - 건물 임차료 절감으로 지출 약 5,000만원 감소 및 주요 행사 및 회의 온라인 대체 및 인력 편재된 인턴 미채용 등으로 인해 경상비 약 4,000만원 절감

# 1. (의결 1호) 제59기 결산(안)에 대한 승인

과목	제59기 (기준)	제58기 (비교)
<b>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b>		
<b>고유목적사업수입</b>	<b>836,851,927</b>	<b>860,877,459</b>
1. 회비	669,400,000	660,400,000
2. 교육수입	106,545,947	167,375,000
3. 총회&심포지엄	21,150,000	200,000
4. 기타수입	39,755,980	32,902,459
<b>고유목적사업비용</b>	<b>830,143,887</b>	<b>719,859,686</b>
1. 일반사업비	298,054,633	144,879,064
2. 교육사업비	100,378,079	111,679,855
3. 인건비	320,679,425	291,338,295
4. 일반관리비	111,031,750	143,761,949
<b>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감</b>	<b>6,708,040</b>	<b>141,017,773</b>
<b>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b>		
고유목적사업수입	-	-
고유목적사업비용	15,728	9,929,200
<b>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감</b>	<b>(15,728)</b>	<b>(9,929,200)</b>
<b>순자산의 증감</b>	<b>6,692,312</b>	<b>131,088,573</b>
기초 순자산	1,581,202,138	1,450,113,565
기말 순자산	1,587,894,450	1,581,202,138

# 1. (의결 1호) 제59기 결산(안)에 대한 승인

## II 자산목록 명세표 (2022.12.31. 기준, 단위 : 원)

분류	예치은행	제59기 (기준)	제58기 (비교)
상품권	상품권	2,600,000	1,200,000
	<b>소 계</b>	<b>2,600,000</b>	<b>1,200,000</b>
보통예금	우리은행(보통예금)-교육	16,133,810	44,534,803
	우리은행(보통예금)-대표	8,267,666	38,876,616
	우리은행(보통예금)-사무국	15,970,318	43,997,246
	우리은행(보통예금)-연금	1,306,283	1,304,983
	우리은행(기업 고단백 MMDA)	566	566
	<b>소 계</b>	<b>128,714,214</b>	<b>96,492,369</b>
정기예금	우리은행(정기예금)	1,000,000,000	1,000,000,000
	우리은행(정기예금)	200,000,000	200,000,000
	우리은행(정기예금)	100,000,000	100,000,000
	우리은행(정기예금)	100,000,000	100,000,000
	우리은행(정기예금)	50,000,000	50,000,000
	새마을금고(정기예탁금)	100,000,000	-
<b>소 계</b>	<b>1,550,000,000</b>	<b>1,450,000,000</b>	
<b>합 계</b>		<b>1,591,578,643</b>	<b>1,580,714,214</b>

## 2. (의결 2호) 임원 선임(안)에 대한 승인

### II 의결 주문

- 제60기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승인을 거쳐 ‘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II 제안 이유

- 정관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및 제24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 선임(안)에 대해 총회 의결안건으로 상정

### II 주요 내용

- 임기 만료 이사에 대한 연임, 교체 및 이직 등으로 사임 표명 이사의 교체 절차 진행
  - (절차) 임기 만료 안내 → 연임, 교체(同 법인회원사 내) 및 임기만료 검토(법인회원사 안배, 다수 연임 이사 등 고려) → 연임 이사, 교체 이사 선정 → 신규 선임 이사 추천 요청(공석 법인회원사 대상) → 임원 선임(안) 상정
  - (임기만료) 김무하 이사(신한EZ손해보험), 김진원 이사(前 오렌지라이프), 박중언 이사(한라), 서재영 이사(RNA)
  - (교체요청) 김상민 이사(前 IBK연금보험), 장진영 이사(前 더맵계리), 최선호 이사(DB손해보험)



## 2. (의결 2호) 임원 선임(안)에 대한 승인

- (연임) 회 활동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이사 연임(안) 상정(연임 이사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 3년)

### 연임 이사(16명, 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강석훈	EY한영 상무	권승수	코리안리 선임계리사	권유숙	서울보증보험 선임계리사	김용운	신한EZ 선임계리사
나일중	메리츠화재 선임계리사	모동진	신한라이프 팀장	박용철	농협생명 선임계리사	박준기	AIG손해보험 부장
박종길	교보생명 부장	송민용	ABL생명 전무	신봉열	흥국생명 상무	신현덕	카디프생명 상무
정영택	우체국금융개발원 실장	제종욱	김앤장 전문위원	최진호	KB라이프 전무	피터진	동양생명 전무

- (신규 선임) 법인회원사 안배 및 회 활동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신규 이사 선임(안) 상정(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 3년)

### 신규 선임 이사(7명, 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책
김경동	현대해상 선임계리사	김성수	IBK연금보험 부장	김현영	더맵계리컨설팅 수석	김학출	DB손해보험 상무
박형준	한화손해보험 선임계리사	이전호	농협손해보험 선임계리사	최현철	신한라이프 상무		

※ 본회 임원은 사업계획, 기준 등을 심의하며, 보험산업 발전 및 회원 전문성 제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보수 명예직임

### 3. (의결 3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

#### II 의결 주문

- 제60기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II 제안 이유

- 정관 제13조(총회 의결사항)에 의거, 정관 개정(안)에 대해 총회 의결안건으로 상정

#### II 주요 내용

- (배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구조로 개선하여 사업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공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정관 개정(안)은 현 회장 취임(2018년) 및 연임(2021년) 시, 운영소견서 및 공약 등에서 강조된 사항이며, 2020년부터 집행위원회, 이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임
  - 최종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위원회(22년 12월) 및 이사회(22년 4분기) 사전 승인 완료
- (개정사항) 주요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3. (의결 3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

#### 1 공익 역할 확립 : 정관 내 목적, 사업 조항에 공익 역할 추가

- (필요성) 보험업법 제178조에 의거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공익 역할 확립
- (주요내용) 정관 내 목적 및 사업 항목에 국민의 권익 보호, 공익 기여 및 계리 관련 정보 제공 명시
- (기대효과) 계리사회 및 계리사가 공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정 역할 하는 수행하는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관 개정(안) 변경대비표

현재 정관	개정(안) 반영 정관
제2조(목적) 본회는 보험계리사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교육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계리업무에 대한 정책자문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국제교류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의 권익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2. 보험계리사의 건전한 업무 질서 유지 3. 보험계리사 직무의 개선 및 확충 4. 회원의 품위와 자질 향상 5. 회원의 권익 보호 6. 국제 교류의 증진 및 공익 기여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계리에 관한 조사 연구 2.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계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 2. ~ 9. (생략) 10. (신설) 사회공헌과 공익사업 11. 기타 필요한 사항

### 3. (의결 3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

#### 2 임원 임기 개선 등 : 임기 조정(3년 → 2년) 및 단임제(회장) 도입

- (필요성) 친목 위주로 구축된 현 운영 구조는 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회원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제한
- (주요내용) 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회장의 한하여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변경
- (기대효과) 계리사가 회 운영에 참여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직전회장·회장·차기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을 통한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해외 선진 계리사회 벤치마킹)

#### 정관 개정(안) 변경대비표

현재 정관	개정(안) 반영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신설)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제3차년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보궐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제2차년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보궐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3. (의결 3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승인

#### 3 운영구조 개편 : 위원회 → 기구로 확장

- (필요성) 다수의 위원회 중심의 사업 추진 구조에서 권역별로 통합된 기구 체제로 개편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기존 위원회 중심의 사업 운영 체계에서 역할 중심을 확장된 구조인 기구 체계로 개편
- (기대효과) 정관 내 회 운영 체계를 현실화하여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정당성, 탄력성 등 확보

#### 정관 개정(안) 변경대비표

현재 정관	개정(안) 반영 정관
<p><b>제21조(위원회 운영 및 구성)</b>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u>위원회</u>를 설치 운영한다.</p> <p>② <u>위원회</u>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p> <p>③ <u>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b>제21조(기구 운영 및 구성)</b>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u>기구</u>를 설치 운영한다.</p> <p>② <u>기구는 원과 위원회</u>로 구성한다.</p> <p>③ <u>기구</u>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b>제5조(회원)</b> ②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회원은 <u>보험업법시행령</u>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p> <p>2. 준회원은 <u>보험업법시행령</u>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상품·계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b>제5조(회원)</b> ②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정회원은 <u>보험업법</u>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p> <p>2. 준회원은 <u>보험업법시행규칙</u>에서 정하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상품, 계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p>
<p>※ 정관 제5조는 법령 부분의 단순 오기로 함께 개정 예정</p>	

## 1 계리사법 제정 추진

- **(추진배경)** 계리사 제도는 1981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2,050명 이상의 계리사를 배출하였으며, 지난 45년 동안 계리사는 상품 개발, 부채 산출,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험 산업의 건전성 제고 등에 기여하는 등 한국이 세계 6~7위 수준의 보험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전문가로서 주요 핵심 역할 수행
- 다만,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2023년) 등으로 인해 보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계리사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 계리사와 전문성, 사회적 역할·책임 등이 유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에 역할 등이 일부 명시되어 있음(계리사의 역할, 책임, 권한 등에 대해 유사 전문가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험사 내 선임계리사 및 독립계리법인에 대한 요건 및 역할 규정 위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계리사 제도를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계리사 제도 발전과 동시에 계리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1 계리사법 제정 추진

- (추진경과) 작년 하반기 생·손보 선임계리사 6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계리사법 제정 작업을 진행 하였으며, 작년 말부터는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계리사법령 제정 작업 및 입법 발의 절차 추진 중

(참고) 국내 전문자격사 관계 법령 현황 등

전문가	등록기관	등록 수	관계 법령	비고
보험계리사	금융감독원	2,050명	보험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인회계사	회계사회	23,938명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966년 제정)	직무, 시험, 등록, 권리와 의무, 전문가 단체, 연수, 양벌 등에 대해 규정
감정평가사	감평사회	4,514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2016년 제정)	
세무사	세무사회	14,720명	세무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961년 제정)	
공인노무사	노무사회	5,619명	공인노무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985년 제정)	
변리사	변리사회	4,013명	변리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961년 제정)	
관세사	관세사회	2,108명	관세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1995년 제정)	

- (향후절차) 2023년 내 의원 입법을 통한 법 제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발의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회원 권익 제고에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제정할 계획



## 2 계리사 등록 업무 수행

- (배경) 작년 11월 21일 당국에서 배포한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의거하여 계리사 등록업무를 본회로 이관 준비(감독원 → 계리사회)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일부 발췌, 17p]

### (3) 보험계리사 등록업무 이관(시행령 개정 23년 1분기 中)

-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 → 계리사회로 이관
- ※ 타 전문자격 사례(회계사 등록 : 회계사회, 세무사 등록: 세무사회)와 동일

- 본회가 계리사 등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회원 관리 저변이 확보되어 계리사 자질 향상, 전문성 제고, 신규 계리사에 대한 교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하여 제공할 예정
- 차질 없는 등록 업무 이관 및 수행 등을 위하여 회원 DB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내규 등을 정비하며, 등록 업무 전담 인력을 배정할 계획



## 3 IFRS17 및 K-ICS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자율규제) 본회는 자율규제기구로서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IFRS17 계리보고서) 본회는 IFRS17 재무제표 및 결산 기준(회계기준, 계리방법론, 내부통제 등)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IFRS17 계리보고서 ver 1.0’ 배포 완료(2023년 2월), 이후 업계 내 계리보고서 활용도 증진을 위해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 등으로 연계 예정

### IFRS17 계리보고서 의의 및 활용방안

(1) 핵심 정보 제공

(2) 감독 당국 대응

(3) 내외부 검증 효율성 제고

(4) 비교분석 기능 확보

- (외부검증 자율규제 T/F) 본회가 21년 9월 제정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관련, IFRS17 도입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검증내용, 절차 등을 보완하는 등 매뉴얼을 내실화하고 법규 개선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 추진(23년 2월부터 T/F 운영 중)
- (IFRS17 실손보험 보고서) IFRS17 실손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 측정 모델·가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 및 배포 완료(2023년 2월), 보고서 상의 핵심 요소들은 향후 자율규제 차원에서 실무기준 등에 반영 예정

### 4 2024 국제계리사회(IAA) 서울 총회 개최

- (2024 서울총회) 국제계리사회(IAA) 서울 총회가 2024년 5월 21일~26일(4박 5일 간)로 개최 확정
  - IAA 총회 : 계리 관련 현안 논의와 의사결정이 진행되며, 각종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약 3~500명의 각국 계리사회 대표단과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
- (기대효과) 한국의 보험계리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보험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서울 총회를 통해 IFRS17 Full Adoption 국가인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함
- (개최준비) 서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전홍규)를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2023 호주 총회 참석 및 홍보, 행사 기획 및 준비, 유관기관 및 관광당국 등에 협조요청 등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홍보단)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와 본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2023년 5월, 호주 총회에 참가하여 전세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총회 홍보 및 참가를 독려하고 계리 관련 국제 이슈 및 동향 등을 전파, 공유할 계획